

2021년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65건(제2021-73001호~7459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73001호~73024호(순번 1번~24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73025호~73035호(순번 25번~35번)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73036호~73037호(순번 36번~37번)는 ○○○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73038호~74595호(순번 38번~1595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9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74596호~74597호(순번 1596번~1597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전번호 74594호(순번 1594번)~74595호(순번 1595번)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이므로 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459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1-8484호~894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459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6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597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순번 6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쇼핑 포털인 '○○○○○'에서 '●●●●●'를 248,40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음.

(순번 19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오픈마켓인 '△△△△△'에서 '▲▲▲▲▲'를 442,560원에 해외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음.

본 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기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인 스트리밍 기기의 판매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서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합법 VOD 서비스처럼 자체 서버에 저장된 영화, 방송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강나래 전문위원: 다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가 닫히게 될 경우에는 스트리밍 기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게 됨.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서버가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서버가 닫히더라도 기기 자체가 불법이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어 결국 구매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됨.
- C 위원: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권고 하는 것도 중요하나, 해당 서비스의 서버 자체를 셧다운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은 URL이 차단될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임. 기기 판매를 막는 ‘꼬리 자르기’식 보다는 ‘몸통을 겨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EV BOX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보임. 이상의 의견들을 보호원 소관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임. 이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가결 의견임.
- A,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4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5번~35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 ‘▼▼▼▼▼’, ‘◆◆◆◆◆’ 등을 10포인트에서 50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1개 게시물임.

(순번 27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완결본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3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200화를 그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5번~3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3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6번~37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영화) ‘●●●●●●’, ‘◆◆◆◆◆◆’를 우리말 더빙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3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 전체 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6번~3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37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8번~159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좋아하면 울리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54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좋아하면 울리는'을 371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2의 전편을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3. 12.부터 방송을 개시한 웹드라마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걸스 오브 막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5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걸스 오브 막시'를 32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51분 42초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3. 3.에 공개한 영화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마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09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마인'을 13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1화 전체분량인 1시간 6분 21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5. 8. ~ 2021. 6. 27.에 방송한 16부작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순번 1596번~1597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596번~159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순번 1594번~1595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1594번~1595번과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사안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8번~159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596번~1597번은 부결하고, 순번 38번~1595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96번~1597번은 부결하고, 순번 38번~159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4596호~74597호(순번 1596번~1597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73001호~74595호(순번 1번~159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5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484호~894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